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490-3315~9



제1562호 2009. 8. 6.

공 고

제2009-603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2
제2009-611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3
제2009-613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4
제2009-614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5
제2009-617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7

인사발령

행정직 공무원 휴직 연장(육아)		8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승진임용		8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490-3317 / FAX: 490-3640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603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 건 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 사용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상표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이미지를 보존하며,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 중소기업 공동상표 전용사용권 취소기준 신설(안 제8조의2)
-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법적보호 기준 신설(안 제8조의3)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에 비치함(☎490-3365)

2009년 8월 6일

중 랑 구 청 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 건 명 :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유가인상 및 물가상승에 맞추어 현실화함으로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안 제명)
-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변경(안 제1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인상에 따른 변경(안 제8조)
- 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조문 정비(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개정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소행정과에 비치함(☎490-3375)

2009년 8월 6일

중랑구청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 건 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내용

-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예산 적정성 여부 등(안 제3조)
- 건당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과 건당 4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등 심의대상(안 제4조)
- 용역시행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심의요청서에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심의요청(안 제11조)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홍보과(예산팀)에 비치됨(☎490-3316)

2009년 8월 6일

중 랑 구 청 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위임사무 중 「약사법」 등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검진기관 지정 및 「정신보건법」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 등으로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항 번호 띄어쓰기 및 항 번호 삭제(안 제2조, 제4조, 제5조)
- 위임사무 중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안 별표)
 - 약국에 관한 사무(안 별표 제9호)
 - 「약사법」 중 제16조➡제20조, 제20조➡제22조, 제33조➡제41조, 제64조➡제69조, 제64조의2➡제70조, 제65조➡제71조, 제67조➡제74조, 제68조➡제75조, 제69조➡제76조, 제69조의2➡제77조, 제71조의2➡제80조, 제71조의3➡제81조, 제79조➡제98조, 제70조➡제78조로 각각 개정
 -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안 별표 제10호)
 - 가호부터 자호까지 “동법”을 “「의료기기법」”으로 하고, 차호의 「의료법」 제30조제3항”을 “「의료기기법」 제47조”로 개정
 -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안 별표 제11호)
 - 「의료법」 중 제30조제3항➡제33조제3항, 제30조제6항➡제33조제5항, 제33조➡제40조, 제49조➡제61조, 제50조➡제63조, 제51조➡제64조, 제63조의2➡제84조, 제53조의2➡제67조, 제72조➡제93조로 각각 개정

-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안 별표 제12호)
 - 「의료법」 중 제31조제1항➡제35조로 개정
- 안마·접골·침구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안 별표 제13호)
 - 「의료법」 중 제60조➡제81조, 제61조➡제82조로 각각 개정
-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안 별표 제14호)
 - 가호의 “「의료기사법」”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나호부터 사호까지의 “동법”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각각 개정
- 치과기공시설의 인정·인정취소 및 업무정지(안 별표 제15호)
 - “「의료기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로 개정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무(안 별표 제16호)
 - 「의료법」 중 제32조의2➡제37조로 개정
-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안 별표 제19호)
 - 「주민등록법」 중 제17조의8➡제24조, 제18조의2➡제30조로 각각 개정
- 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신설(안 별표 제20호)
- 「정신보건법」에 관한 사무 신설(안 별표 제21호)

Ⅱ. 본 안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홍보과에 비치함(☎490-3317)

2009년 8월 6일

중 랑 구 청 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기존에 운영중인 청소년독서실의 주소변경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별표 1]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
- [별표 2]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정복지과에 비치함(☎490-3493)

2009년 8월 6일

중랑구청장

인사발령

행정직 공무원 휴직 연장(육아)

2009. 8. 5.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이금숙	복직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09.08.05.~2010.08.04.)	신내제2동	지방행정 주사보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승진임용

2009. 8. 5.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김종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 주사보
2	신은실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지방행정 주사보
3	서현식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지방행정 주사보
4	정판영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목제2동	지방행정 주사보
5	김현섭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감사담당관	지방행정 서기
6	장현정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지방행정 서기
7	이상용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지방행정 서기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8	양혜경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행정국 기획홍보과	지방행정 서기
9	우종필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행정국 기획홍보과	지방행정 서기
10	박은영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재정경제국 재무과	지방행정 서기
11	김원정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지방행정 서기
12	이경미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지방행정 서기
13	전상진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보건소 보건위생과	지방행정 서기
14	박노균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면목제3·8동	지방행정 서기
15	이민하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지방행정 서기보
16	황은영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지방행정 서기보
17	전세미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주민생활지원국 교육지원과	지방행정 서기보
18	이정화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면목본동	지방행정 서기보
19	김지은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면목제4동	지방행정 서기보
20	정창민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면목제7동	지방행정 서기보
21	박지숙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상봉제2동	지방행정 서기보

22	김호정	지 방 행 정 서 기 에	임 함	중 화 제 1 동	지 방 행 정 서 기 보
23	이충일	지 방 행 정 서 기 에	임 함	중 화 제 1 동	지 방 행 정 서 기 보
24	조명주	지 방 행 정 서 기 에	임 함	중 화 제 2 동	지 방 행 정 서 기 보
25	방기삼	지 방 행 정 서 기 에	임 함	묵 제 2 동	지 방 행 정 서 기 보
26	김윤미	지 방 행 정 서 기 에	임 함	망 우 제 3 동	지 방 행 정 서 기 보
27	윤현경	지 방 행 정 서 기 에	임 함	망 우 제 3 동	지 방 행 정 서 기 보
28	김선영	지 방 행 정 서 기 에	임 함	신 내 제 1 동	지 방 행 정 서 기 보
29	정진아	지 방 행 정 서 기 에	임 함	신 내 제 2 동	지 방 행 정 서 기 보
30	홍기정	지 방 세 무 주 사 보 에	임 함	재 정 경 제 국 세 무 1 과	지 방 세 무 서 기
31	강미영	지 방 세 무 주 사 보 에	임 함	재 정 경 제 국 세 무 2 과	지 방 세 무 서 기
32	박명성	지 방 세 무 서 기 에	임 함	재 정 경 제 국 세 무 1 과	지 방 세 무 서 기 보
33	오현명	지 방 세 무 서 기 에	임 함	재 정 경 제 국 세 무 2 과	지 방 세 무 서 기 보
34	최순혜	지 방 사 회 복 지 주 사 보 에	임 함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지방사회복지 서 기
35	최윤희	지 방 사 회 복 지 주 사 보 에	임 함	주민생활지원국 사 회 복 지 과	지방사회복지 서 기
36	이지은	지 방 사 회 복 지 주 사 보 에	임 함	중 화 제 2 동	지방사회복지 서 기

37	박연희	지 방 사 회 복 지 주 사 보 에 임 함	목 제 1 동	지방사회복지 서 기
38	박은하	지 방 사 회 복 지 서 기 에 임 함	면 목 제 2 동	지방사회복지 서 기 보
39	정기택	지 방 사 회 복 지 서 기 에 임 함	면목제3·8동	지방사회복지 서 기 보
40	김민중	지 방 사 회 복 지 서 기 에 임 함	중 화 제 2 동	지방사회복지 서 기 보
41	은종숙	지 방 사 회 복 지 서 기 에 임 함	중 화 제 2 동	지방사회복지 서 기 보
42	양유진	지 방 사 회 복 지 서 기 에 임 함	망 우 제 3 동	지방사회복지 서 기 보